#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70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 구자근 · 최수진 · 김기현

박준태 • 인요한 • 김위상

정동만 · 김도읍 · 이상휘

김성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 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등).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제2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를 "제13조제1항"으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3조제1항"으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 의 100)"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46조의4제5항, 제76조의13제1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3항제3호 계산식 중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을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제13조(과세표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	
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u>다만, 제1</u>	
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u>제&gt;</u>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	
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	
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	
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	
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	

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 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다.

- 1. (생략)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 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 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 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 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 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 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 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 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생 략)

1 (혀해고 간으)

- 1. (연얭<u></u> (연증)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 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

③
1. (현행과 같음)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 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 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 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 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 센트로 한다)

#### ④ ~ ⑥ (생 략)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지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 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 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 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 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 다.

1. · 2. (생략)

## 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 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 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4) ~ (b)	(연맹파	至一)
제45조(합병	시이	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등

② (위체리 리 O )

⑤
제13조제1항
소득금액-

1. • 2. (현행과 같음)

- ⑥ ~ ⑧ (생 략)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략)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1. · 2. (생략)
  - ⑥ ~ ⑧ (생 략)
-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u>다만, 제1호의 금</u> 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 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13조제1
<u>ठ</u> }
소득금액
<del></del>
1.·2.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단서 삭제>
- <u> 1 1 11 11 1 1 1 1 1 1 1 1 1 1 1 1</u>

- 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 경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 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 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 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 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 0을 한도로 한다.
  - 1. ~ 3. (생략)
  - ② ~ 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91조(과세표준) ①
<단서
· <u> </u>
1:42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